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13일,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8.)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

제3차 전체회의(2026. 4. 22.)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기표의원)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기도)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에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보호관찰소장의 수사를 위한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2020년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동종 범죄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므로, 2019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 이후 이러한 인력 충원 및 재정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회 등 외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를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_____ _____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u>대한 수사를 의뢰하기</u>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_____ _____ ----- <u>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u> -----
③ 삭제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u>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u> 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 _____ _____ _____. ----- <u>성폭력범죄</u> ----- _____ _____ _____ _____

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 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야 한다. 1. ~ 4. (생 략)	_____. 1. ~ 4. (현행과 같음)
--	---------------------------------------